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03
----------	------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2월 5일 이병도 의원외 19명
2.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3월 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요지

1. 제안이유

- 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임신·출산·양육은 부·모가 함께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나.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제출 취지)

-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을 부모가 함께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인 부모’ 가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 주기를 명시화 함으로써(5년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됨(안 제6조제1항).

2 검토의견

가. 장애인가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안 제1조부터 제7조)

- 개정안은 임신·출산·양육의 책임이 모 위주에서 부·모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동 조례의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남성장애인까지 포함한 장애인가족으로 확대 하려는 안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여성장애인의</u>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조 (목적) ----- <u>장애인가정</u> -----

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장애인가정의 -----

-----.

제2조 (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
----- 장애인가정 -----
-----.

제4조 (차별금지) 장애인가정-----

----- 않을 -----
-----.

제5조 (계획수립 등) ----- 장애인가정 -----

----- 가족정책 -----
-----.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
장애인가정-----

-----.

1. ~ 4. (현행과 같음)
5. ----- 장애인가정 -----

- 현재 동 조례를 근거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시 출산 준비 보조, 산후조리 보조,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는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과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등이 있음.
- 먼저,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은 여성 장애인에게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¹⁾ 여성 장애인의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²⁾하기 위하여 홈헬퍼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출산 예정(임신)또는 9세 미만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등록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3년 사업시행 이후 지원 아동 연령, 홈헬퍼 파견시간 등을 변동시켜 왔으며, 2019년 156명의 여성 장애인에게 홈헬퍼를 지원하였음.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 주요 추진 경과>

2003	2004	2005	2012	2016	2017	2018	2020
서울 자녀양육 지원사업	국립 고궁사업 채	지방 방	시행지 일부개 칭	시행지 원안대 로 변경	시행지 일부개 칭	시행지 원안대 로 변경	
			만 9세 미만 ↓ 만 7세 미만	만 7세 미만 ↓ 만 9세 미만	활동지원 서비스와 사업목적이 상이하므로 중복가능	만 9세미만 → 만7세 미만 1~6급 → 1~3급 ↓ 만 7세 미만 → 만 9세 미만 1~3급 → 1~6급	자녀연령 세분화 및 홈헬퍼 파견시간 확대

1)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출산예정(임신) 또는 9세 미만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 '20년 예산 : 1,815,988천원(시비 100%)(2020년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

2)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2019)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³⁾은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2년 시행 이후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성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비장애인) 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추진실적 '14~'19>

(단위:명)

구분	총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54	217	141	220	244	248	231	216
여성(1~6급)	938	171	85(1~3급)	169	201	208	185	179
남성(1~3급)	316	46	56	51	43	40	46	37

※'15년부터 여성장애인 대상 확대(1~3급→1~6급)

○ 개정안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모 중심에서 부·모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 자녀양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국외 사례 검토 결

3)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출산,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20년 예산 : 232,200천원
- 재원부담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 시(186백만원) : 국비 50%, 시비 50%
 -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출산시(46백만원) : 시비 100%

과를 통해서도 여성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보다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지원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확인⁴⁾ 할 수 있음.

- 집행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양육을 부모가 함께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데 원안 동의하였음. 참고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사업의 경우 남성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 중에 있음.

나. 장애인가정 실태조사 관련 사항(안 제6조)

-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인 실태조사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여 실태조사 실시의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u>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6조 (실태조사) ① ----- <u>장애인가정</u> ----- ----- <u>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4) 미국 : 미국의 경우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홈헬퍼와 같은 자녀양육 및 보육 등과 관련하여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서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이 ‘장애부모’와 ‘장애비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부모의 자녀양육 및 보육을 지원하고 있음.
 영국 : 미국과 유사하게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음. 특히, 장애여성을 위한 다양한 민간지원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임.
 호주 : 미국, 영국과 유사하게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다양한 인력이 투입되어 ‘장애부모’, ‘비장애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복합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출처 :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2019

- 그간 동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는 ‘2019년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서울시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욕구조사⁵⁾가 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의 자녀 연령 세분화 및 홈헬퍼 파견 시간 등을 확대⁶⁾ 하였음.
- 개정안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규정함으로써(5년) 장애인 가족 관련 정책의 계획·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집행부는 동 조항 개정에 대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의 적절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집행부가 조례를 근거로 추진중인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음.

5) <서울시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욕구조사 개요>

- 주 관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584호(2019.8.6.) 수탁과제 요청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제5조(계획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 조사대상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이용자 129명 대상 면접 조사 실시

6) <2020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 홈헬퍼 인건비 인상
 - 시간당 임금단가 : '19년 8,350원 → '20년 8,590원 ※ 2020년 최저임금
- 자녀연령 세분화 및 홈헬퍼 파견시간 확대

<실태조사 조항이 있는 장애인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조례명	실태조사(전수조사) 주기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3년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3년
3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5년(개정안 반영시)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장애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도 원안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조례 개정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3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이병도·이영실·김화숙·여명·
이상훈·김기덕·박순규·신정호·
유용·이광호·김정태·봉양순·
채인묵·김용연·이광성·김제리·
김소양·임종국·김혜련·김동식
의원(20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임신·출산·양육은 부·모가 함께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를 “장애인가정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제4조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앞고 모성을 보장받을”을 “앞을”로 한다.

제5조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여성정책”을 “가족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여성장애인”을 각각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u></p>	<p><u>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여성장애인</u>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u>장애인가정</u> ----- ----- ----- <u>장애인가정의</u> ----- -----.</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u>여성장애인</u>”이란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p>	<p>제2조 (정의) “<u>장애인가정</u>”이란 부 또는 모가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p>
<p>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은 <u>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u>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제3조 (시장의 책무) ----- ----- <u>장애인가정</u> ----- -----.</p>
<p>제4조 (차별금지) <u>여성장애인</u>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p>	<p>제4조 (차별금지) <u>장애인가정</u>----- -----</p>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을 보
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여성장
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장
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 않을 -----
-----.

제5조 (계획수립 등) ----- 장애인가
정-----

----- 가족정책 -----
-----.

제6조 (실태조사) ① ----- 장애인가
정-----
-----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
-- 장애인가정-----

-----.

1. ~ 4. (현행과 같음)

5. ----- 장애인가정---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실태조사)의 개정 따른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 실시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차별금지), 제5조(계획 수립 등),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은 ‘여성장애인’ 용어를 ‘장애인가정’ 으로 개정 함으로써 부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해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부가 장애인인 가정의 현황을 구하기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0,000천원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30,000천원(연평균 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 실시 비용 (안 제6조)	30,000	-	-	-	-	30,000
	소계(b)	30,000	-	-	-	-	30,000
□총 비용(b-a)		30,000	-	-	-	-	30,000

○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 실시 비용 ≍ 30,000천원

-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실태조사 실시 비용(5년마다 1회)

= 조사비용×조사횟수

= 30,000천원×1회

= 30,000천원

※ 참고) 실태조사 단가(2018년, 2019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

- 아동종합실태조사 30,000천원(2019년)

- 청소년실태조사 30,000천원(2018년)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500천원(2019년)

- 노숙인실태조사 63,000천원(2019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